제네바, 홍콩 및 저지와의 비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제네바: 신탁법 없는 신탁

제네바와 싱가포르는 모두 국제적 가문을 위한 신탁을 관리하지만, 두 곳의 법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위스는 2007년 7월 1일부터 헤이그 신탁 협약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외국 신탁을 승인하지만, 고유의 신탁은 없습니다. 스위스의 전문 수탁자는 금융기관법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네바 편에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가를 받은 수탁자는 11곳에 불과하였으며, 같은 책은 스위스의 신탁 과세 취급이 2007년의 행정 회람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1]

따라서 싱가포르는 제네바에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국내 신탁법, 수탁자와 은행을 아우르는 단일 규제기관, 그리고 같은 관할권에서 준거법을 정하고 관리하며 소송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제네바는 싱가포르에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 유럽 고객층과의 근접성, 그리고 재단과 지주회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스위스 가문에게 두 금융중심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싱가포르가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 수탁자를 둔 싱가포르 법 신탁은 협약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주회사에서도 강점이 비슷하게 나뉩니다. 제네바는 약 14%의 실효세율로 회사에 과세하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표면세율 17%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배당에 3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며, 외국 주주는 조약에 따라서만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싱가포르는 배당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외국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가 없다는 점이 표면세율의 차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 가장 가까운 경쟁자

홍콩은 싱가포르보다 더 최근에 신탁법을 개혁하였고,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갔습니다. 홍콩 신탁은 무기한 존속할 수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100년의 한도를 유지합니다. 두 관할권 모두 유보권한을 투자 및 자산관리에 한정하며, 어느 쪽도 비공익 목적신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신탁승인조례(Recognition of Trusts Ordinance)를 통해 헤이그 협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PTC에 관한 별도의 체계는 없습니다.[3] 라이선스 신탁회사를 통해 PTC를 감독하는 싱가포르의 방식이 더 체계적인 해결책이며, 국제 은행들은 가문 구조를 온보딩할 때 이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펀드와 관련하여 홍콩은 자체 회사형 펀드 기구인 개방형 펀드회사(open-ended fund company)를, 이후에는 유한파트너십 펀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VCC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는 펀드와 하위펀드를 서로 다르게 집계하고,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투자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4]

저지: 역외 금융중심지의 기준점

저지는 여전히 신탁 입법의 기준점입니다. 저지 신탁은 무기한 존속할 수 있고, 저지 법은 집행인(enforcer)을 둔 비공익 목적신탁과 폭넓은 유보권한 목록을 허용하며, 그 방화벽은 외국 판결의 불승인까지 미칩니다. 저지는 또한 수탁자의 착오에 관한 Hastings-Bass 원칙을 성문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5] 싱가포르는 법률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유연성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싱가포르는 저지가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경쟁합니다. 아시아 고객과의 근접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성, 깊이 있는 은행 시장, 그리고 가치사슬 전체를 감독하는 규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검토한 구조들은 흔히 두 곳을 결합합니다. 최상위에 저지 목적신탁을 두고, 그 아래에 싱가포르 수탁자, 매니저 및 회사를 두는 방식입니다.

숫자로 보기

2026년 11월 MAS 등록부상 라이선스 신탁회사 라이선스: 67건. 라이선스 신탁회사의 최소 자본금: 25만 싱가포르달러. 필요한 거주 관리자: 최소 2명. 싱가포르 신탁의 영구구속기간: 100년. 2025년 말 가변자본회사: 1,406개, 하위펀드 3,443개. 2025년 말 싱가포르 운용자산: 6조 7,000억 싱가포르달러, 그중 76%는 해외에서 조달. 라이선스 펀드운용사: 1,320개. 2025년 말 세제 인센티브를 받는 싱글 패밀리오피스: 2,000개 이상.[6] 법인세율: 17%. 배당 원천징수세: 없음. 조세협정 적용 관할권: 약 100개. 상속세(estate duty): 2008년 2월 15일 이후의 사망에 대해 폐지.

주

1.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신탁협약 현황표, 앞의 주: 스위스에 대해 2007년 7월 1일 발효.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IV장, “Les trustees et les structures patrimoniales” 절 및 제V장, “Trusts et fondations : la fiscalité d’instruments étrangers” 절: 금융기관법에 따라 인가 대상인 수탁자; *LExpert Invest*에 따르면 2022년 FINMA 인가 수탁자 11곳; 신탁 과세에 관한 2007년 8월 22일자 스위스 조세회의(Swiss Tax Conference) 회람 제30호. ↩

2.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E편 제V장, “La fiscalité des entreprises depuis 2020” 절 및 “L’impôt anticipé et les conventions de double imposition” 절: 2020년부터 제네바시의 실효세율 13.99%, 기초자치단체 영업세 폐지 후 약 14.7%로 상승; 배당에 대한 35%의 원천징수세; 100개 이상의 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Bedell Cristin, “Jurisdictional Comparison” (2020년 8월), 앞의 주, 서론 및 항목 (4), (6)–(8), (15), (17). ↩
4. 홍콩 개방형 펀드회사 제도(2018년부터 시행) 및 유한파트너십 펀드 제도(2020년부터 시행). ↩
5. Bedell Cristin, “Jurisdictional Comparison” (2020년 8월), 앞의 주, 서론 및 항목 (6)–(8), (10), (11), (15): Hastings-Bass에 관한 Trusts (Jersey) Law 제47조. ↩
6. MAS, “Written Reply to Parliamentary Question on Single Family Offices”, 2026년 8월 5일 회의, 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12월 말 기준 “more than 2,000 Single Family Offices (SFOs) receive tax incentives”; 사상 최대 총 운용자산 6조 7,000억 싱가포르달러.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